문서번호	인사처-1532			
보존기간	전 명			
결재일자	2016.03.08.			
공개여부	공개			
방침번호	이사장직무대행 방침 제			
	77호			

팀장	인사처장	이사장직무대행		
· 협 조	팀장		팀장	

2015 임단협 관련 규정개정 이사회 부의(안)

2016.



「'15년 임·단협 체결관련 규정개정을 위한」 제 503회 이사회 부의(안)

□ 2015년 임·단협 체결 개요

○ 교섭기간: '15.9.1~'15.10.28

○ 교섭차수 : 본회의 3차, 실무회의 7차

○ 체 결 일: '15.10.28

○ 주요내용

(임금) '14년 대비 '15년 임금총액 3.8%(자연증가분 1.4%별도) 인상 및 '16년 인건비 인상율(3%)범위 내 기본급 선 인상, 사내기금 출연 8급 및 9급 직원 보전수당 지급 등

(단협) 8급/9급 승진소요연수 단축, 육아휴직 기간 일원화, 지참·조퇴 제도 도입, 임금피크제 도입 등

□ 규정개정(안) 주요요지

○ 취업규칙

가.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포상휴가 정비 및 지참제도 도입

나.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

○ 인사규정

- 가. 하위직 직원의 승진최소소요연수 조정 : 5년 → 3년
- 나.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양정기준 정립 : 강등 2년 → 1년 6월
- 다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관련 규정 정비 : 58세 → 60세
- 라.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휴직기간 조정 : 여성 3년 → 3년

○ 보수규정

- 가. 보수표 개정
 - '14년 총액 대비 '15년 임금총액 3.8%(1.4%별도) 인상 및 '16년 인건비 인상율(3%) 범위 내 '16년 기본급 선 인상반영 ('15년 대비 2.7%)
 - 일반직 8급/9급 최저임금 보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보전수당(월 4만원) 반영

○ 서비스직직원관리규정

- 가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관련 규정 정비 : 58세 → 60세
- 나. 보수표 개정
 - '14년 총액 대비 '15년 임금총액 3.8%(1.4%별도) 인상 및 '16년 인건비 인상율(3%) 범위 내 '16년 기본급 선 인상반영 ('15년 대비 2.7%)

붙임: 이사회 부의(안) 1부. 끝.